

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 (김종민·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세종특별자치시의 비례대표시·도의원정수를 지역구시·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4로 변경함(안 제19조제3항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최 기 도)